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0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는 문제를 반영 하였습니다.

## I 목 차

### 제1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 제 1 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01 목적	3
02 적용대상	4
03 운영기관의 지정 등	6
04 인증기관의 지정	9
05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12
06 인증신청 등	15
07 인증평가 등	20
08 인증기준 등	22
09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24
10 재평가 요청 등	26
11 예비인증의 신청 등	27
12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등	32
13 인증 수수료	33
14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36
■ 종합예제문제	38
(※ 제2장, 제3장: 시험공고일 기준 적용문제 정오대조표)	51

# 0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핵심 NOTE

## 핵심 1 목적(제1조)

### (1) 목적

-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 ②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③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 ④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제문제 0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규칙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 ②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
-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 ④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해설

설계검토서 작성기준은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목적에 해당된다.

답 : ①

핵심 NOTE

예제문제 0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규칙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 ②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 ③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 ④ 에너지관리공단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시에서 정한 시행세칙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에너지관리공단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시에서 정한 시행세칙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의 목적에 해당된다.

답 : ④

핵심 2 적용대상(제2조)

(1) 적용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은 다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제 3조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장이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등 특성상 법제 17조 1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①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③ **업무시설**
-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예제문제 01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으로 가장 부적합 한 것은?

- ① 단독주택
- ② 공동주택
- ③ 업무시설
- ④ 연면적 500m<sup>2</sup> 미만의 관광 휴게시설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다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제 3조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장이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등 특성상 법제 17조 1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답 : ④

예제문제 02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은 어느 것인가?

- ① 업무시설
- ② 문화집회시설 중 난방면적이 500m<sup>2</sup> 미만인 건축물
- ③ 연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 ④ 관광 휴게시설 중 냉방면적이 500m<sup>2</sup> 미만인 건축물

해설

면적과 무관하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다.

답 : ①

핵심 NOTE

예제문제 03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면적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건축물인 경우)

- ① 바닥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 ② 연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 ③ 냉방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 ④ 거실의 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해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답 : ③

핵심 3 운영기관의 지정 등(제3조)

(1) 운영기관의 지정 등

1) 운영기관의 지정 및 고시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
  - 녹색건축센터 지정공고(국교부공고 제 2013-380호, 13.6.28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② 지정에 따른 협의 및 심의

- 1.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2.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
- 3. 심의 :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거침

③ 운영기관의 업무

- 1. 영제 12조제 2항에 따른 에너지관련전문가의 양성, 관리, 교육 및 감독에 관한 업무
- 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 3.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 4.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 5.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현황 :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예제문제 01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 ① 운영기관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 ② 운영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운영기관은 인증기관에서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교통부 장관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한다.

답 : ③

예제문제 02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전년도 사업추진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을 언제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는가?

- ① 매년 12월 31일까지
- ② 매년 1월 31일까지
- ③ 매년 2월 31일까지
- ④ 매년 3월 31일까지

해설

운영기관의 장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 하여야 한다.

답 : ②

핵심 NOTE

예제문제 03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 ② 인증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평가보고서를 작성
- ③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 ④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해설

인증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평가보고서의 작성은 인증기관의 장의 업무에 해당 한다.

답 : ②

예제문제 04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 ②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
- ③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 ④ 영제 12조제 2항에 따른 에너지관련전문가의 양성, 관리, 교육 및 감독에 관한 업무

해설

인증기관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답 : ②

**핵심 4** 인증기관의 지정(제4조)

(1) 인증기관의 지정

① 협의 및 공고

1. 협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함
2. 공고 :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내용
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 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전문인력보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상근(常勤)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법 제 12조제 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평가 관련 전문가로 인정 받은 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핵심 NOTE

- 5.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6.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7.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⑤ 인증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 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 납부 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예제문제 01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이 보유해야 할 상근(常勤) 전문인력의 자격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3년 2급]

- ①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②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③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④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설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상근(常勤)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 하여야 한다.

- ① 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평가 관련 전문가로 인정받은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②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③ 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④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⑤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⑥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⑦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답 : ③



핵심 NOTE

예제문제 05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전문인력의 경력사항으로 가장 부적합 한 것은?

- ① 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평가 관련 전문가로 인정받은 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② 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③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④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설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답 : ③

핵심5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제5조)

(1) 인증기관의 지정

1) 지정서발급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유효기간

-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3) 갱신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핵심 NOTE

4) 변경증명 서류제출

④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건축물의 소재지
3. 전문인력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예제문제 01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 중 틀린 것은?

-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비상근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함
- ②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 ③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1. 기관명, 2. 건축물의 소재지, 3. 전문인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해설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상근(常勤)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함 **답 : ①**

핵심 NOTE

예제문제 02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답 : ③

예제문제 03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 중 (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건축물의 소재지
3. 전문인력

- ① ㉠ 인증기관의 장, ㉡ 7일 ㉢ 국토교통부장관
- ② ㉠ 인증기관의 장, ㉡ 15일 ㉢ 국토교통부장관
- ③ ㉠ 인증기관의 장, ㉡ 20일 ㉢ 운영기관의 장
- ④ ㉠ 인증기관의 장, ㉡ 30일 ㉢ 운영기관의 장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답 : ④



핵심 NOTE

1. 최종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설계변경확인서 및 설명서
7. 예비인증서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부터 제 7호까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서류

2) 인증처리기간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 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0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인증평가기간 연장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 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4) 신청서류의 보완 요청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 2항에 따른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 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 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 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제문제 01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자”로서 가장 부적합 한 사람은?

- ① 건축주
- ② 건축물 소유자
- ③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소유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 ④ 건축물 관리자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신청자로 건축물관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답 : ④

예제문제 0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3년 1급】

- ①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증명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류의 내용 사실과 다른 경우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공동주택에 대해 인증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해설

- ② 인증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증명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 2항에 따른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 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공동주택에 대해 인증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답 : ①

예제문제 03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시 제출할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② 건축, 기계, 전기 설계도면
- ③ 조명밀도 계산서                                ④ 건물전개도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시 제출할 서류에는 최종설계 도면이 포함된다. 건축, 기계, 전기 설계도면은 예비 인증의 신청서류에 포함된다.

답 : ②

핵심 NOTE

예제문제 04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규칙 및 기준의 내용에 대해 맞는 것은? [13년 2급]

- ① 인증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그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증명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단독주택에 대해 인증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이 다를 경우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 ① 인증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그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증명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 2항에 따른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 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답 : ②

예제문제 05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시 제출할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건축물부위별 성능내역서
- ② 설치예정확인서
- ③ 조명밀도 계산서
- ④ 설계변경확인서 및 설명서

해설

설치예정확인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계산서류에 포함된다.

답 : ②

예제문제 06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에 관련된 사항 중 틀린 것은?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 2항에 따른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 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 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 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제출서류에는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조명밀도계산서, 장비용량 계산서 등이 있다.
- ③ 인증 처리기간은 50일 이내(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 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0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0일)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답 : ③

예제문제 07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후 며칠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는가? (단,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 된 날부터)

- ① 20일 ② 30일
- ③ 40일 ④ 50일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0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0일)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답 : ④

예제문제 08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후 며칠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는가? (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① 10일 ② 20일
- ③ 30일 ④ 40일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0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0일)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답 : ④

핵심 NOTE

예제문제 09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이 인증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인증 평가 기간의 최대 연장 가능 일수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10일
- ② 20일
- ③ 30일
- ④ 40일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답 : ②

예제문제 10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에 관련된 사항 중 틀린 것은?

- ①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출서류에는 최종 설계도면, 건물 전개도, 장비용량 계산서 등이 있다.
- ③ 인증 처리기간은 50일 이내(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40일)이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 2항에 따른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 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 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 3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제 2항에 따른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 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 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답 : ④

핵심 7 인증평가 등 (제7조)

(1) 인증 평가 등

1) 인증평가보고서 작성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 6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 결정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인증 평가보고서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3) 3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하려는 경우 건축주 등에게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제공

③ 인증기관의 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제문제 01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사항 중 틀린 것은?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한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평가서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답 : ④

예제문제 02

다음 중 인증기관의 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몇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하는가?

- ① 1년 ② 2년
- ③ 3년 ④ 5년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답 : ③

핵심 NOTE

예제문제 03

다음 중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 ② 표본조사와 서류심사
- ③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 ④ 표본조사와 현장실사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하고, 인증신청건축물에 대한 인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답 : ③

예제문제 04

다음 중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사람은?

- ① 인증기관의 장
- ② 운영기관의 장
- ③ 국토교통부장관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하고, 인증신청건축물에 대한 인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답 : ①

핵심 8 인증기준 등 (제8조)

(1) 인증기준 등

1) 인증 기준

-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냉방, 난방, 급탕(給湯),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으로 한다.



핵심 NOTE

**핵심 9**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9조)

(1)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발급

- ①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 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대상, 인증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제문제 01

인증기관의 장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할 때에는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
- ②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 ③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7년
- ④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답 : ④



핵심 NOTE

**핵심10** 재평가 요청 등 (제10조)

**(1) 재평가 요청 등**

1) 재평가 요청

- ① 제 7조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나 법제 20조 제 1항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평가에 따른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참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조 【인증의 취소】

- ①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제문제 01**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이의 신청에 따른 재평가 등과 관련된 사항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 ① 제7조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나 법제 20조 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평가에 따른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 ③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인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답 : ④

예제문제 02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와 관련된 내용 중 인증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 ②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③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 ④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해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으면 되므로, 인증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답 : ③

핵심 11 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1조)

(1) 예비인증의 신청

- ① 건축주 등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건축물에너지 사용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건축주등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 5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원본서류 이를 저장한 전자적 기록매체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 1. 건축, 기계, 전기 설계도면
- 2. 건축물부위별 성능내역서
- 3. 건물전개도
- 4. 장비용량 계산서

핵심 NOTE

- 5. 조명밀도 계산서
- 6.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용 데이터시트
- 7. 성적서 및 인증서 등 기타 인증에 필요한 서류

- 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6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예비인증의 유효기간**

- 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 3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4) 그 외 사항**

상기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인증처리기간, 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서류의 보완), 제7조제1항·제2항(인증평가보고서 작성, 인증등급 결정)제8조(인증기준 등), 제9조제3항(인증결과의 제출), 제10조(재평가 요청 등) 및 법 제20조(인증의 취소)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참고 제6조**

**제6조 【인증 신청】**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0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인증 평가 등】**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現場實査)를 하고,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보고서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제8조 【인증 기준 등】**

-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냉방, 난방, 급탕(給湯),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으로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인증 등급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9조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평가 요청 등】**

- ① 제7조에 따른 인증 평가 결과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평가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핵심 NOTE

예제문제 01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에 관련된 사항 중 틀린 것은?

- ①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인증 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이다.
- ③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본인증일 전까지 이다.
-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난방, 냉방, 급탕(給湯),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해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까지로 한다.

답 : ③

예제문제 02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본 인증 신청일 까지
- ②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예비인증 갱신일 까지
- ③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까지
- ④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 신청일 까지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까지로 한다.

답 : ③

예제문제 03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부적합 한 것은?

- ①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 일까지로 한다.
- ④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답 : ④

예제문제 04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시 제출할 서류로서 가장 부적합 한 것은?

- ① 적용예정확인서
- ② 조명밀도 계산서
- ③ 장비용량 계산서
- ④ 건축, 기계, 전기 설계도면

해설

적용예정확인서는 예비인증의 신청시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답 : ①



**핵심 13** 인증 수수료 (제13조)**(1) 인증 수수료****1) 인증수수료의 범위**

- ① 건축주 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재평가 인증수수료**

- ② 제10조제 1항(제11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결제방법**

-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인증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와 운영비용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5) 운영기관지원**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 2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예제문제 02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②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답 : ①

예제문제 03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의 합계범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기숙사
- ② 냉방 또는 난방면적 500m<sup>2</sup> 이상인 문화시설
- ③ 다가구주택
- ④ 업무시설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의 범위는

1.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
2. 공동주택(기숙사), 업무시설, 냉방 또는 난방면적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답 : ③



3)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 제 1항 및 제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예제문제 01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 ①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 ② 인증 평가 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 ④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해설

운영기관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답 : ③

예제문제 02

다음 중 건축물에너지 수수료, 인증운영위원회 등에 관련된 사항 중 틀린 것은?

- ① 건축주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인증대상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수수료를 내야한다.
- ② 재평가 신청 시 고시된 인증 수수료를 내야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인증심사위원회이다.

해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인증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답 : ④

# 01 종합예제문제

## □□□ 목적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기준
-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의 종류
- ③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 ④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 해설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검토서 작성기준은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목적에 해당 된다.

#### ■ 목적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의 종류
-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3.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 4. 인증기간 및 운영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위임된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대상 건축물의 종류
- ②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③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 ④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계획수립

### 해설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계획수립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 ■ 목적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의 종류
-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3.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 4. 인증기간 및 운영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대상 건축물의 종류
- ②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③ 인증유효기간, 중개수수료
- ④ 인증기간 및 운영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사항

### 해설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수수료이다.

#### ■ 목적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의 종류
-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3.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 4. 인증기간 및 운영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적용대상

4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단독주택
- ② 공동주택
- ③ 업무시설
- ④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냉방 또는 난방면적이 3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 해설

#### 적용대상

- 1. 단독주택
- 2. 공동주택
- 3. 업무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정답 1 ④ 2 ④ 3 ③ 4 ④

**5**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냉방면적이 300m<sup>2</sup>인 다중주택
- ② 냉방면적이 300m<sup>2</sup>인 다가구주택
- ③ 냉방면적이 300m<sup>2</sup>인 박물관
- ④ 운동시설로서 냉방 또는 난방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해설** 적용대상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6**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대상 건축물의 면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바닥면적이 500m<sup>2</sup> 인 건축물
- ②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건축물연면적이 500m<sup>2</sup> 인 건축물
- ③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거실바닥면적이 500m<sup>2</sup> 인 건축물
- ④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난방면적이 500m<sup>2</sup> 인 건축물

**해설** 적용대상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 운영기관의 지정 등

**7**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 ②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 ③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 ④ 영제 12조 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전문가의 양성, 관리, 교육 및 감독에 관한 업무

**해설** ③ 운영기관의 업무

1. 영제 12조제 2항에 따른 에너지관련전문가의 양성, 관리, 교육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8**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 ② 인증평가보고서의 작성
- ③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 ④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해설** ③ 운영기관의 업무

1. 영제 12조제 2항에 따른 에너지관련전문가의 양성, 관리, 교육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3. 건축, 설비, 에너지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전문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7. 해당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13** 인증기관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상근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상근 전문인력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 ①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② 해당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③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④ 해당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설

인증기관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제 1호의 전문인력은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제 1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 관련 전문가로 인정받은 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축, 설비, 에너지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전문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7. 해당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

**14** 인증기관의 지정·고시에 관련된 내용 중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 |               |             |
|---------------|-------------|
| ① ㉠ 국토교통부장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인증운영위원회     |             |
| ② ㉠ 국토교통부장관   | ㉡ 환경부장관     |
| ㉢ 인증운영위원회     |             |
| ③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국토교통부장관   |
| ㉢ 건축위원회       |             |
| ④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국토교통부장관   |
| ㉢ 녹색건축운영위원회   |             |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15**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해설

⑤ 인증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결과통보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기관명, 건축물의 소재지, 전문인력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인증기관의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등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지정서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유효기간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으로 한다.
3. 갱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 5년 ㉡ 5년 ㉢ 5년
- ② ㉠ 10년 ㉡ 5년 ㉢ 5년
- ③ ㉠ 5년 ㉡ 10년 ㉢ 5년
- ④ ㉠ 10년 ㉡ 10년 ㉢ 10년

해설

1. 지정서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유효기간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3.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 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 인증기관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지정의 갱신 등에 관련된 내용 중 가장 부적합 한 것은?

- ① 인증기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상근전문인력을 5명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 ④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기관명, 건축물의 소재지,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인증신청 등

**21**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 ① 설계자 및 감리자
- ② 건축주
- ③ 건축물소유자
- ④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해설

건축주, 건축물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소유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6** 다음 중 건축물중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 ① 건축주와 건축물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조명밀도계산서, 장비용량계산서, 설치예정확인서는 인증신청원본서류에 해당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0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 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 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설치예정확인서는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서류 중 계산서류에 포함된다.

□□□ 인증평가 등

**27** 다음 중 인증평가서 작성에 관한 내용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한다.
-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물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평가서 결과에 따라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관련된 인증평가 등의 내용 중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 등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① ㉠ 인증기관의 장    ㉡ 3년    ㉢ 건축주
- ② ㉠ 인증기관의 장    ㉡ 2년    ㉢ 감리자
- ③ ㉠ 국토교통부장관    ㉡ 2년    ㉢ 건축주
- ④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설계자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물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2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관련된 인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사람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
- ② 운영기관의 장
- ③ 건축사
- ④ 인증기관의 장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하고, 인증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인증 기준 등

**30**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은 1++ 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10개 등급으로 한다.
-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은 1+++ 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9개 등급으로 한다.
-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은 1++++ 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10개 등급으로 한다.
-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은 1+++ 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으로 한다.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은 1+++ 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으로 한다.

**31**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난방, 난방, 급탕, 조명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요구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 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으로 한다.
- ③ 인증기준 및 인증등급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 ④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이란 에너지소요량의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을 말한다.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2**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의 기준항목 중 1차에너지 소요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냉방
- ② 조명
- ③ 환기
- ④ 전기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3**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의 내용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 ①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이란 에너지소요량의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을 말한다.
- ②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③ 인증기준은 인증신청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난방, 난방, 급탕,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요구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3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 ① 인증기준은 인증신청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날짜,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대상, 인증날짜,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한 다음날부터 6년으로 한다.
-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한 다음날부터 9년으로 한다.
-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재평가 요청 등

**36**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재평가 요청등과 관련된 사항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 ① 인증 평가 결과나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 결과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평가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 ③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인증취소사유가 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재평가와 관련된 내용 중 인증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 ②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건축신고 등이 취소된 경우
- ③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 ④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해설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하고, 건축신고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예비인증의 신청 등

**38**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에 관련된 사항 중 틀린 것은?

- ① 예비인증을 받은 감리자 등은 본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② 인증 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이다.
- ③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까지 이다.
-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난방, 냉방, 급탕(給湯),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해설**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본 인증을 받아야 한다.

**39**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부적합 한 것은?

- ①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공사완료 후 까지로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까지로 한다.

**40**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시 제출할 서류로서 가장 부적합한 것은?

- ① 건축, 기계, 전기설계도면
- ② 예비인증 신청서
- ③ 조명밀도 계산서
- ④ 자동제어계통도

**해설**

(1) 예비인증의 신청

- ① 건축주 등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건축물에너지 사용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 1. 건축, 기계, 전기 설계도면
- 2. 건축물부위별 성능내역서
- 3. 건물전개도
- 4. 장비용량 계산서
- 5. 조명밀도 계산서
- 6.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용 데이터시트
- 7. 성적서 및 인증서 등 기타 인증에 필요한 서류

**41**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본 인증 신청일 까지
- ②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예비인증 갱신일 까지
- ③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까지
- ④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 신청일 까지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까지 이다.

**42** 다음 중 인증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 ① 건축주 등은 허가, 신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 할 수 있다.
- ② 예비 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과 동일한 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④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까지로 한다.

**해설**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43** 다음 중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에서 다음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가동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① 인증기관의 장
- ② 운영기관의 장
- ③ 국토교통부장관
-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가동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인증수수료

**44** 다음 중 인증수수료와 관련된 내용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 ① 건축주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서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인증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②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수수료의 일부를 녹색건축센터가 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인증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해설**

인증기관의 장은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지원할 수 있다.

**45** 다음 중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인증대상 건축물의 면적
- ② 인증대상 건축물의 건축면적
- ③ 인증대상 건축물의 용적률
- ④ 인증대상 건축물의 대지면적

**해설**

건축주등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 시 또는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인증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인증수수료를 내야 한다.

**46**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인증수수료의 금액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 ① 단독주택 - 전용면적 120,000m<sup>2</sup> 미만 - 1천1백90만원 이하
- ②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 전용면적 120,000m<sup>2</sup> 이상 - 1천3백 20만원 이하
- ③ 냉방면적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 - 전용면적 60,000m<sup>2</sup>미만 - 1천5백80만원 이하
- ④ 기숙사 - 전용면적 60,000m<sup>2</sup> 이상 - 1천9백80만원 이하

**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의 범위

구분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수수료 금액
1. 단독주택	120,000m <sup>2</sup> 미만	1천1백90만원 이하
2.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		
1. (기숙사)	60,000m <sup>2</sup> 미만	1천7백80만원 이하
2. 업무시설		
3.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m <sup>2</sup> 이상인 건축물		
	60,000m <sup>2</sup> 이상	1천9백80만원 이하

□□□ 인증운영위원회

**47** 다음 중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 ② 인증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사항
- ③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 ④ 인증평가 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해설** 2. 인증운영 위원회의 심의사항

-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3.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 4. 인증 평가 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48** 다음 중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인증평가 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③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 ④ 녹색건축센터 지정의 취소에 관한사항

**해설**

1.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인증운영 위원회의 심의사항

-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3.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 4. 인증 평가 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 0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시험공고일 기준 적용문제 정오 대조표)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2-53	<p><b>(1) 목적</b>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의 인증 신청, 인증기준, 평가기준, 절차 등 재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인증수수료,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위임받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1) 목적</b>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의 인증 신청, 인증기준, 재평가요청, 인증을 받은 건축물 사후관리, 인증수수료,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위임받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예제 문제 01</b>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기준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인증신청, 인증기준, 평가기준, 절차 등 재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 ② 인증을 받은 건축물 사후관리규정 ③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 ④ 건축기준의 완화에 관한 사항</p>	<p><b>예제 문제 01</b>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기준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인증신청, 인증기준, 재평가 요청과 관련된 세부사항 ② 인증을 받은 건축물 사후관리규정 ③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 ④ 건축기준의 완화에 관한 사항</p>
	<p><b>예제 문제 02</b>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기준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평가 기준, 절차 등 재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 ② 인증수수료 규정 ③ 인증기준 규정 ④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p>	<p><b>예제 문제 02</b> 다음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기준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평가 기준, 절차 등 재평가 요청과 관련된 세부사항 ② 인증수수료 규정 ③ 인증기준 규정 ④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p>
2-55	참고   개정 후 법령	참고   개정 후 법령 → 표 삭제(시험범위 적용 안됨)
2-65	참고   규칙 제12조 제13호로 개정될 예정	참고   규칙 제12조 제13호로 개정될 예정 → 삭제(시험범위 적용 안됨)
2-66	참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13조)	참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13조) → 삭제(시험범위 적용 안됨)
2-67	예제문제 03	예제문제 03   → 문제삭제(시험범위 적용 안됨)
2-76	<p><b>1</b>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은? <b>해설</b> 목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의 인증신청, 인증기준, 평가기준, 절차 등 재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인증수수료,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위임받은 사항 등을 규정함</p>	<p><b>1</b>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은? <b>해설</b> 목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의 인증신청, 인증기준, 재평가요청, 인증을 받은 건축물 사후관리, 인증수수료,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위임받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2-76	<p><b>2</b>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은?</p> <p><b>해설</b> 목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의 인증신청, 인증기준, 평가기준, 절차 등 재평가와 관련된 세부 사항,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인증수수료,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위임받은 사항 등을 규정함</p>	<p><b>2</b>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은?</p> <p><b>해설</b> 목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의 인증신청, 인증기준, 재평가요청, 인증을 받은 건축물 사후관리, 인증수수료,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위임받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2-81	문제 20	문제 20   → 문제삭제(시험범위 적용 안됨)

### 0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시험공고일 기준 적용문제 정오 대조표)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2-108 ~ 2-109	<p>  핵심11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제11조) 개정될 예정</p> <p>  참고   규칙 제12조 제13조 ~ 1) 유지·관리</p>	<p>  핵심11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제11조)</p> <p>  참고   규칙 제12조 제13조 ~ 1) 유지·관리 → 삭제(시험범위 적용 안됨)</p>
2-115	<p><b>17</b>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표 2 주거 및 주거용 이외 건축물 용도프로필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p> <p>① 난방설정온도                      ② 설정 요구량 ③ 연간 사용일수                      ④ 열원기기용량</p>	<p><b>17</b>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표 2 주거 및 주거용 이외 건축물 용도프로필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p> <p>① 난방설정온도                      ② 설정 요구량 ③ 연간 사용일수                      ④ 용도별가중치</p>
2-117	<p>  문제 23  </p> <p><b>해설</b> 하반기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증수수료를 납부한 인증 신청 건축물 수수료 수입 <u>합계의 8%반기</u></p>	<p>  문제 23  </p> <p><b>해설</b> 하반기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증수수료를 납부한 인증 신청 건축물 수수료 수입 <u>합계의 8%</u></p>